

인천광역시립박물관 운영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의회

인천광역시립박물관 운영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

(신현환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038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13. 11. .

발 의 자 : 신현환, 강병수 의원
(찬성자 7 인)

1. 제안이유

- 가. 관람료 무료화를 통하여 더 많은 시민들의 방문을 유도하고 박물관 관련 교육·문화프로그램 운영 등 지식 보급을 통하여 박물관 이용을 활성화하는 한편,
- 나. 국내·외 변화된 박물관 환경변화에 맞춰 새롭고 다양화된 각종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「제2장 전시실 및 시설의 이용」을 「제2장 관람」과 「제3장 대관」으로 구분함(안 제5조 ~ 제11조)
- 나. 박물관 관람료 징수 조항을 무료관람으로 변경함(안 제5조)
- 다. 박물관 시설 대관 기준 및 대상 시설을 명확히 하고 대관시설에 한국이민사박물관을 추가함(안 제11조)
- 라. 효율적인 유물수집과 내실있는 유물평가를 위하여 「제5장 유물의 수집 및 관리」를 신설하고 수집실무위원회와 유물평가심의회를 설치 운영함. (안 제5장 제28조 ~ 제31조)
- 마. 자원봉사자(전시 해설사 포함)와 교육 및 문화프로그램 운영을

위한 근거조항을 신설함(안 제38조 ~ 제39조)

바. 별표 1의 시설사용료(제15조 관련)를 개정함(안 별표 1)

사. 별표 2의 박물관 자료 이용료(안 제 37조 관련)를 현실화 함
(안 별표 2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

(1) 「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」 제7조, 제12조

(2) 「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」 제6조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첨부

다. 합 의 :

라. 기 타 :

(1) 신·구조문대비표 : 별첨

(2) 규제심사 :

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 운영 조례” 를 “인천광역시시립박물관 운영 조례” 로 한다.

제2조 중 “인천광역시립박물관” 을 “인천광역시시립박물관” 으로 한다.

제2장의 제목 “전시실 및 시설의 사용” 을 “관람” 으로 한다.

제5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① 박물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.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료를 징수 할 수 있다.

1. 박물관이 자체적으로 기획하는 전시(이하 “자체 기획전”이라 한다)나 다른 박물관의 유물 등을 대여 받아 공동 또는 순회전시 하는 경우
2. 전시실을 대관 받아 전시 등을 하는 경우(이하 “대관전시”라 한다)

② 제1항제1호에 따른 관람료는 시장이, 제1항제2호에 따른 관람료는 대관자가 시장과 협의하여 정한다.

제6조의 제목 “(무료관람)” 을 “(자체기획전 무료관람)” 으로 하고,

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관람료”를 “제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람료”로 하며, 같은 조 제2호 중 “18세 이하 또는”을 “취학전 아동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0호를 제11호로 하고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0. 유물기증 등 박물관 발전에 기여한 자

제7조제1항 중 “발행한다”를 “발행할 수 있다”로 한다.

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9조(행위의 제한) ① 관람자는 박물관의 전시실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1. 흡연, 음주 또는 취식하는 행위
2. 관리자의 허가 없이 조명, 촬영 또는 모사하는 행위
3. 허가 없이 전시품을 만지는 행위
4. 고성, 난무 등 다른 관람자의 관람에 지장을 주는 행위

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퇴관을 명할 수 있다.

제11조 앞에 장 번호 및 장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장 대관

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1조(대관의 허가와 범위) ① 시장은 박물관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전시, 행사 등을 위하여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박물관 시설에 대한 대관을 허가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시장의 대관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.

③ 대관할 수 있는 박물관 시설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.

1. 시립박물관 : 기획전시실, 석남홀, 우현마당
2. 송암미술관 : 기획전시실, 강당, 정원
3. 검단선사박물관 : 기획전시실, 전시용 슬로프
4. 한국이민사박물관 : 기획전시실, 강당

제15조제1항중 “별표 2와” 를 “별표 1과” 로 한다.

제22조 앞의 “제3장 운영위원회” 를 “제4장 운영위원회” 로 한다.

제22조 중 “법 제7조” 를 “「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7조” 로, “인천광역시립박물관운영위원회” 를 “인천광역시립박물관운영위원회” 로 한다.

제23조제6항을 삭제한다.

제27조 다음에 “제4장 심의회” 를 “제5장 유물의 수집 및 관리” 로 한다.

제28조부터 제30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28조(박물관유물의 정의 등) ① 박물관유물(이하 “유물”라 한다)라 함은 발굴·채집·구입·이관·기증·기탁·관리전환·위탁보관 또는 일시보관 등에 의하여 박물관이 수집·보존·전시하는 유·무형의 문

화적 소산물을 말한다.

② 유물의 구입 및 기증과 관련하여 고증 또는 평가가 필요할 경우 시장은 유물수집실무위원회 또는 해당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유물평가심의회를 소집한다.

③ 유물의 수집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제29조(유물수집실무위원회) ① 구입 및 기증 등 수집유물 등의 선정을 위하여 유물수집실무위원회(이하 "실무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
② 실무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평가한다.

1. 구입대상 유물의 선정
2. 이관·기증·기탁·관리전환·위탁보관 등에 관한 평가
3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③ 실무위원회는 3인 이상, 5인 이내로 구성한다.

④ 위원은 본관 유물관리부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본관 및 본관 소속 학예연구직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.

⑤ 위원의 임기는 당해 실무위원회의 종료 시까지로 한다.

제30조(분야별 유물평가심의회) ① 구입 등 수집 유물의 평가를 위하여 분야별 유물평가심의회(이하 "심의회"라 한다)를 둔다.

② 심의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전시·수장유물과 구입유물의 고증
2. 유물의 진위 여부 및 적정가격
3. 국내·외 경매 응찰 유물 선정에 관한 사항

4.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

③ 심의회의 위원은 문화재 및 유물관련 분야별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분야별 3명 이상, 5명 이내로 구성한다.

④ 위원의 임기는 당해 심의회의 종료 시까지로 한다.

제31조 앞의 “제5장 유물 수집” 을 삭제한다.

제3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31조(회의 및 수당 등) ① 심의회는 회의록을 작성·보관한다.

② 심의회에 출석하는 위원 중 인천광역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「인천광역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」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32조의 제목 “(자료구입)” 을 “(유물구입)” 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수장” 을 “소장” 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“박물관” 을 “실무위원회” 로, “심의회 위원들의” 를 “심의회의” 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관장” 을 “시장” 으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 중 “자료” 를 “유물” 로 한다.

제33조의 제목 “(자료기증)” 을 “(유물기증)” 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자료를” 을 “유물을” 로 하며,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이 경우 실무위원회의 평가를 거쳐야 한다.

제3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기증자에게 기증증서와 감사패를 증정할 수 있으며, 기증자에 대한 예우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.

③ 유물의 기증은 무상기증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 기증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심의회의 평가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유물평가액의 20 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기증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34조의 제목 “(자료기탁)” 을 “(유물기탁)” 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자료를” 을 “유물을” 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“자료” 를 “유물” 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자료는” 을 “유물은” 으로, “자료와” 를 “유물과” 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 중 “자료” 를 각각 “유물” 로 한다.

제35조의 제목 “(자료관리)” 를 “(유물관리)” 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자료” 를 “유물” 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“자료는 일반자료와” 를 “유물은 일반유물과” 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“자료” 를 각각 “유물” 로 한다.

제36조제1항 중 “박물관 자료의 안전관리” 를 “안전관리” 로, “자료를” 을 “유물을” 로 하고, “자료를 제외한 자료는” 을 “유물을 제외한 유물은” 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“자료는” 을 “유물은” 으로 한다.

제6장의 제목 “이용 및 대여” 를 “박물관 운영 등” 으로 한다.

제37조의 제목 “(자료이용과 대여)” 를 “(유물이용과 대여)” 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자료” 를 “유물” 로, “박물관자료” 를 “유

물” 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“자료” 를 각각 “유물” 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“자료를” 을 “유물을” 로, “별표 1” 을 “별표 2” 로 하며, 같은 항 단서 중 “학술조사” 를 “학술목적” 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 소장유물을 이용 또는 대여 받은 자가 그 유물을 망실 또는 훼손하거나 그 밖의 손해를 입힌 때에는 시장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이를 수리 또는 복원하거나 그에 상당한 변상을 하여야 한다.

⑤ 소장유물의 이용 및 대여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제38조부터 제39조까지를 각각 제40조부터 제41조까지로 하고 제7장 보칙 앞에 제38조부터 제39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8조(자원봉사자 운영) ① 시장은 박물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(전시 해설사를 포함한다)를 모집·운영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자원봉사자의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와 식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39조(교육·문화 프로그램 운영) ① 시장은 박물관과 관련된 지식을 일반에게 보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·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.

② 교육·문화 프로그램 참가자로부터 수강료 및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.

별표1과 별표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【별표 1】

시 설 사 용 료 (제15조 관련)

1. 기본시설사용료

(단위 : 원)

시 설 명		사용기준	사용료	비 고
시립박물관	기획전시실	1일	50,000	
	영상실(석남홀)	4시간	40,000	
	우현마당	1일	30,000	
송암미술관	기획전시실	1일	35,000	
	강 당	4시간	20,000	
	정 원	1일	35,000	
검단선사박물관	기획전시실	1일	20,000	
	전시용 슬로프	1일	10,000	
한국이민사박물관	기획전시실	1일	35,000	
	강당	4시간	30,000	

※ 사용료 계산

- 사용기준시간 미만은 기준시간으로 계산
- 야간(18시 이후), 공휴일, 휴일은 해당 기준사용료의 20% 가산하여 계산
- 사용시간 초과시 매1시간 초과 마다 해당 사용료의 20% 가산하여 계산
단, 1시간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.

【별표 2】

박물관 유물 이용료 (제37조 관련)

구 분	수 량	이 용 료
사 진 촬 영	1 점	30,000원
탁 본	1 점	30,000원
모 조(실 측)	1 점	30,000원
모 사(실 측)	1 점	30,000원
사진원판사용	1 점	디지털 10,000원 스캔(허가) 5,000원

관련법령 검토와 발취사항

관계법령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input type="checkbox"/>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- 제7조(운영 위원회)- 제12조(설립과 운영) <input type="checkbox"/>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- 제6조(박물관·미술관 운영 위원회)
관련법규 정비대상	
관련자료	

관계법령 발췌사항

【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】

제7조(운영 위원회) ①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국·공립의 박물관과 미술관(각 지방 분관을 포함한다)은 전문성 제고와 공공 시설물로서의 효율적 운영 및 경영 합리화를 위하여 그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운영 위원회를 둔다.

② 운영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12조(설립과 운영)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의 박물관자료 및 미술관자료의 구입·관리·보존·전시 및 지역 문화 발전과 지역 주민의 문화향유권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박물관과 미술관을 설립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박물관과 미술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【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】

제6조(박물관·미술관 운영 위원회)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국공립의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두는 박물관·미술관 운영 위원회(이하 "운영 위원회"라 한다)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② 운영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(互選)한다.

③ 운영 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박물관·미술관이 소재한 지역의 문화·예술계 인사 중에서 그 박물관·미술관의 장이 위촉하는 자와 그 박물관·미술관의 장이 된다.

④ 운영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박물관·미술관의 운영과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
2. 박물관·미술관의 운영 개선에 관한 사항
3. 박물관·미술관의 후원에 관한 사항
4. 다른 박물관·미술관과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

[별첨 2]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 발생 요인

- 제5조(관람료) : 관람료 무료화에 따라 연간 관람료세입 감소
(2012년 박물관 관람료 : 8,500천원)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1항제1호

3. 미첨부 사유

- 예상되는 비용(박물관 무료 관람에 따른 관람료 수입(세입) 감소)이 1억원 미만에 해당됨.

※ 2012년 말 기준 관람료 수입은 8,500천원임

4. 작성자 : 문화복지위원회 신 현 환 의원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<u>인천광역시립박물관 운영 조례</u></p> <p>제2조(적용의 범위) 이 조례의 적용대상 범위는 <u>인천광역시립박물관(이하 “박물관”이라 한다)과 소속기관인 분관을 포함한다.</u></p> <p><u>제2장 전시실 및 시설의 사용</u></p> <p>제5조(관람료) ① 「<u>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</u>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5조에 따라 <u>박물관의 진열품을 관람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1에 따른 관람료를 먼저 납부하여야 한다.</u></p> <p><u><신 설></u></p> <p>② <u>제1항에 따라 이미 납부한 관람료는 박물관에 귀책사유가 없으면 반환하지 아니한다.</u></p>	<p><u>인천광역시립박물관 운영 조례</u></p> <p>제2조(적용의 범위) ----- ----- <u>인천광역시립박물관</u>----- ----- --</p> <p><u>제2장 관람</u></p> <p>제5조(관람료) ① <u>박물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료를 받을 수 있다.</u></p> <p>1. <u>박물관이 자체적으로 기획하는 전시(이하 “자체 기획전”이라 한다)와 다른 박물관의 유물 등을 대여 받아 공동 또는 순회전시 하는 경우</u></p> <p>2. <u>전시실을 대관 받아 전시 등을 하는 경우 (이하 “대관 전시”라 한다)</u></p> <p>② <u>제1항제1호에 따른 관람료는 시장이, 제1항제2호에 따른 관람료는 대관자가 시장과 협의하여 정한다.</u></p>

제6조(무료관람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람료를 면제한다.

1. (생략)
2. 18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인 사람
3. ~ 9. (생략)

<신 설>

10. (생략)

제7조(관람권) ① 시장은 관람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관람권을 발행한다.

제9조(관람자 준수사항) 전시실 관람자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.

1. 진열품에 손을 대지 말 것
2. 허가 없이 진열품을 촬영 또는 모사하지 말 것. 다만, 연구의 목적으로 미리 시장의 허가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3. 위험물 또는 거대한 물품을 휴대하지 말 것
4. 박물관 안에서는 흡연 또는 위험한 행위를 하지 말 것
5. 그 밖에 시장이 지시하는 사항

제6조(자체기획전 무료관람) ---

제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람료-----

1. (현행과 같음)
2. 취학전 아동과 -----
3. ~ 9. (현행과 같음)
10. 유물기증 등 박물관 발전에 기여한 자
11. (현행 제10호와 같음)

제7조(관람권) ① -----

발행할 수 있다.

제9조(행위의 제한) ① 관람자는 박물관의 전시실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1. 흡연, 음주 또는 취식하는 행위
 2. 관리자의 허가 없이 조명, 촬영 또는 모사하는 행위
 3. 허가 없이 전시품을 만지는 행위
 4. 고성, 난무 등 다른 관람자의 관람에 지장을 주는 행위
-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퇴관을 명할 수 있

<신 설>

제11조(사용의 허가) ① 시설(기획전시실·영상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.

제15조(사용료) ① 시설의 사용료

다.

제3장 대관

제11조(대관의 허가범위) ① 시장은 박물관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전시, 행사 등을 위하여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박물관 시설에 대한 대관을 허가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시장의 대관 허가를 받아야 하며,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.

③ 대관할 수 있는 박물관 시설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.

1. 시립박물관 : 기획전시실, 석남홀, 우현마당
2. 송암미술관 : 기획전시실, 강당, 정원
3. 검단선사박물관 : 기획전시실, 전시용 슬로프
4. 한국이민사박물관 : 기획전시실, 강당

제15조(사용료) ① -----

기준은 1일 또는 4시간 단위로 하며 사용료는 별표 2와 같다.

제3장 운영위원회

제22조(박물관운영위원회) 법 제7조와 같은 법시행령 제6조에 따라 인천광역시립박물관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제23조(위원회 구성)

- ① ~ ⑤ (생략)
- ⑥ 자료의 수집·전시·감정평가를 위하여 위원회 안에 박물관 자료평가 심의회(이하 “심의회”라 한다)를 두어야 한다.

제4장 심의회

제28조(심의회 구성) ① 제23조제6항에 따른 심의회는 분야별로 3명 이상으로 하되, 5명 이내로 구성한다.

② 위원은 각 분야별 박물관 유물을 평가할 수 있는 전문지식을 소지한 사람 중에서 위원회

----- 별표 1과 같다.

제4장 -----

제22조(박물관운영위원회) 「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7조와 -----
-----인천광역시립박물관운영위원회-----

제23조(위원회 구성)

- ① ~ ⑤ (현행과 같음)
- ⑥ <삭제>

제5장 유물의 수집 및 관리

제28조(박물관유물의 정의 등) ① 박물관유물(이하 “유물”라 한다)라 함은 발굴·채집·구입·이관·기증·기탁·관리전환·위탁보관 또는 일시보관 등에 의하여 박물관이 수집·보존·전시하는 유·무형의 문화적 소산물을 말한다.

② 유물의 구입 및 기증과 관련하여 고증 또는 평가가 필요할 경우 시장은 유물수집실무

의 추천을 받아 관장이 위촉한다.

③ 위원의 임기는 1년 이내로 한다. 다만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
제29조(심의회 기능) 심의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전시·수장유물과 구입유물의 고증
2. 유물의 진위 여부 및 적정 가격
3. 국내·외 경매 응찰 유물 선정에 관한 사항
4. 그 밖에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30조(회의 등) ① 관장은 구입할 유물 및 소장 유물의 감정평가를 위하여 수시로 심

위원회 또는 해당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유물평가심의회를 소집한다.

③ 유물의 수집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제29조(유물수집실무위원회) ①

구입 및 기증 등 수집유물 등의 선정을 위하여 유물수집실무위원회를(이하 "실무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
② 실무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평가한다.

1. 구입대상 유물의 선정
2. 이관·기증·기탁·관리전환·위탁보관 등에 관한 평가
3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③ 실무위원회는 3인 이상, 5인 이내로 구성한다.

④ 위원은 본관 유물관리부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본관 및 분관 소속 학예연구직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.

⑤ 위원의 임기는 당해 실무위원회의 종료 시까지로 한다.

제30조(분야별 유물평가심의회)

① 구입 등 수집 유물의 평가를 위하여 분야별 유물평가심의회

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.

② 심의회는 회의록을 작성·보관한다.

제5장 유물수집

제31조(박물관자료의 정의 등) ① 박물관자료(이하 “자료”라 한다)라 함은 발굴·채집·구입·이관·기증·기탁 또는 일시보관 등에 의하여 박물관이 수집·보존·전시하는 유형의 문화적 소산물을 말한다.

② 자료의 고증·감정 또는 평가가 필요할 경우 관장은 해당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의회를 소집한다.

(이하 “심의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심의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전시·수장유물과 구입유물의 고증

2. 유물의 진위 여부 및 적정가격

3. 국내·외 경매 응찰 유물 선정에 관한 사항

4.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

③ 심의회의 위원은 문화재 및 유물관련 분야별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분야별 3명 이상, 5명 이내로 구성한다.

④ 위원의 임기는 당해 심의회의 종료 시까지로 한다.

<삭 제>

제31조(회의 및 수당 등) ① 심의회는 회의록을 작성·보관한다.

② 심의회에 출석하는 위원 중 인천광역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「인천광역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」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③ 자료의 관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.

제32조(자료구입) ① 시장은 박물관에 수장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유물을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유물 구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
② 유물은 박물관에서 평가대상 유물을 선정 후 심의회 위원들의 감정을 거쳐 구입하여야 한다.

③ 경매유물(해외경매를 포함한다)은 심의회의 실물평가 결과에 따라 관장이 응찰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.

④ 자료의 구입은 시보 고시·홈페이지 공지 등을 통한 공개구입을 원칙으로 한다.

제33조(자료기증) ① 시장은 법 제8조에 따라 박물관의 전시와 연구 등에 필요한 자료를 기증받을 수 있다. <후단신설>

② 기증자에게 감사패를 증정할 수 있으며,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회의 평가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자료평가액의 2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기증 포상

제32조(유물구입) ① -----
----- 소장-----

② --- 실무위원회-----

----- 심의회
의 -----

③ -----

----- 시장-----

④ 유물-----

제33조(유물기증) ① -----

----- 유물을 ---
----- 이 경우 실무
위원회의 평가를 거쳐야 한다.

② 기증자에게 기증증서와 감사패를 증정할 수 있으며, 기증자에 대한 예우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.

금을 지급할 수 있다.

<신 설>

제34조(자료기탁) ① 시장은 전시와 연구 등에 필요한 자료를 기탁 받아 활용할 수 있으며, 기탁자에게 감사패를 증정할 수 있다.

② 자료의 기탁 또는 반환 시에는 모든 절차를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. 단, 기탁기간이 만료되기 전에는 원칙적으로 자료를 반환하지 않는다.

③ 기탁 받은 자료는 박물관 소장 자료와 동일하게 관리한다.

④ 기탁기간 만료 후 기탁자의 소재가 불명일 경우, 일정기간 공고 후 기증 자료로 처리한다.

⑤ 기탁기간 만료 후 기탁자의 반환의사가 없을 경우에는 기탁자의 승인을 얻어 기증 자료로 처리한다.

제35조(자료관리) ① 시장은 소장

③ 유물의 기증은 무상기증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 기증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심의회의 평가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유물평가액의 2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기증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34조(유물기탁) ① -----

----- 유물을

② 유물-----

③ ----- 유물은 -----

----- 유물과-----

④ -----

----- 유물-----

⑤ -----

----- 유물

제35조(유물관리) ① -----

자료에 대하여 망실·훼손 또는 도난 되지 아니하도록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.

②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자료는 일반자료와 격리하여 보존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③ 자료의 이동시에는 안전운반에 필요한 특수함 등을 사용하고 안전 운송에 필요한 특수차량 등을 이용한다.

④ 시장은 자료의 망실, 도난 또는 훼손 등에 대비하여 필요한 경우 손해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.

제36조(수장고 관리) ① 시장은 박물관 자료의 안전관리를 위한 금고설치 등 자료를 격납할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하여야 하며, 전시 또는 대여해 준 자료를 제외한 자료는 수장고에 보관하여야 한다.

② 수리 및 복원 중에 있는 자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안전 방호 시설이 갖추어진 별도 장소에 보관할 수 있다.

제6장 이용 및 대여

제37조(자료이용과 대여) ① 자료

유물에-----

② ----- 유물
은 일반유물과 -----

③ 유물-----

④ ----- 유물-----

제36조(수장고관리) ① -----
--- 유물-----
----- 유물을 -----
----- 유물을 -----

② ----- 유물
은 -----

제6장 박물관 운영 등

제37조(유물이용과 대여) ① 유물

의 이용이라 함은 박물관자료에 대해 모사·사진촬영·복제·복사·탁본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.

② 시장은 박물관 운영과 소장 자료의 원형보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박물관 소장 자료에 대한 이용 또는 대여를 허가할 수 있다.

③ 제2항에 따라 소장 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법 제25조에 따라 별표 1의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. 다만, 학술조사 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익적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.

<신 설>

<신 설>

<신 설>

-----유물-----

② -----유물-----

-----유물에-----

③ -----유물을-----

-----별표 2-----

-----학술목적-----

④ 소장유물을 이용 또는 대여 받은 자가 그 유물을 망실 또는 훼손하거나 그 밖의 손해를 입힌 때에는 시장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이를 수리 또는 복원하거나 그에 상당한 변상을 하여야 한다.

⑤ 소장유물의 이용 및 대여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제38조(자원봉사자 운영) ① 시장은 박물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(전시해설사

<p><신 설></p> <p>제38조 (생략)</p> <p>제39조 (생략)</p>	<p>를 포함한다)를 모집·운영할 수 있다.</p> <p>② 시장은 자원봉사자의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와 식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.</p> <p>제39조(교육·문화 프로그램 운영)</p> <p>① 시장은 박물관과 관련된 지식을 일반에게 보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·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.</p> <p>② 교육·문화 프로그램 참가자로부터 수강료 및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.</p> <p>제40조 (현행 제38조와 같음)</p> <p>제41조 (현행 제39조와 같음)</p>
--	--